

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					접수번호	
주택신청 유형	단지명		전용면적		가구원수	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
	주 소		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 집전화	해당시·군·구 전입일			
신청순위	우선 공급	☐ (제31조제6항) 국가유공자·5.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,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☐ (제31조제7항)혼인기간5년 이내 신혼부부(☐ 순위:혼인기간 3년 이내, ☐ 순위:혼인기간 3년 초과) ① 혼인신고일(. .) ② 미성년(만20세 미만,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) 자녀수 ()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(시·군) 거주자() ※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에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만 표시 ☐ (제31조제8항)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* 신혼부부 우선공급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- 미성년(만20세 미만,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) 자녀수 ()인				
	1순위	☐ 기초생활수급자 ☐ 국가유공자(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 포함)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☐ 일군위안부피해자 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☐ 한이탈주민 ☐ 개인등록증 교부된자 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				
	2순위	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			
	3순위	☐ 청약저축 가입자				
주택 및 자산현황	☐ 무주택		☐ 부동산가액('12년기준 126백만원)이하		☐ 자동차('12년기준 2467만원) 이하	
	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> 1.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2. 부동산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및 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작성합니다. 3. 주택소유 및 자산(부동산 및 자동차)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					
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인)						
시장(군수·구청장) 귀하						
본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(갱신계약포함)심사 및 입주후 관리를 위해 본인,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자산,금 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,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						

